

아동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(2019년 1월 29일)에 따른 신규대조표

- 부산시그룹홈 지원센터 위탁에 따라 규정 명칭 및 자구 일괄 개정

1. 서울특별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→ 아동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아동복지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-목적 수정
<p>제5조(센터의 조직) 센터의 조직은 서울시 지원 조례 규정을 기반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.</p>	<p>제5조(센터의 조직) 센터의 조직은 <u>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</u> 규정을 기반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.</p>	
<p>제6조(직원임용)</p> <p>① 센터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항외 직원은 센터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면하고 시장 및 법인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④ 직원의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직원임용)</p> <p>① 센터장은 <u>법인 인사위원회</u>를 거쳐 <u>이사회 보고 후</u> 회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 센터장의 임기는 <u>수탁기간에 따르며, 법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3년으로 한다.</u></p>	-자구 수정 및 명칭 명확히 함 - 수탁기간에 따라 임기가 다름
<p>제8조 (보고 및 감사) 협의회는 센터</p>	<p>제8조 (보고 및 감사) 수탁기관의</p>	- 부설 및 수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<p>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.</p>	<p>장은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, 연2회 법인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</p>	<p>탁기관의 이사회 보고 규정 명확화</p>
<p>제9조 (운영위원회)</p> <p>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9조 (운영위원회)</p> <p>② <u>위원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정에 의거하며, 해당 조항이 없을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.</u></p> <p>④ (신설)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해 연1회 법인 이사회에 보고한다.</p>	<p>-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부분 명확히 하고 법인의 보고하는 의무를 명시함.</p>
<p>제10조 (결재권한)</p> <p>센터는 법인의 인감사용, 사업계획의 승인, 사업진행상 중대한 변경 및 신규사업 승인은 법인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0조 (결재권한)</p> <p><u>지원센터는</u></p>	<p>-자구수정</p>

	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	제정일자	2014.01.22
	아동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9.01.29
		개정번호	03

개정 란	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사유
	0	2014.01.22	최초 제정
	1	2016.02.02	일부 개정
	2	2017.03.28	일부 개정
	3	2019.01.29	명칭에서 서울특별시 삭제 일부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아동복지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운영의 주체) 센터의 제반사업의 주체는 센터의 수탁자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협의회의 책무) 협의회는 수탁 기간 내 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센터의 기능)

-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1.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
 2. 그룹홈 아동 입소, 퇴소, 상담, 조사,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
 3.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
 4.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
 5.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 6.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 7.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
 8.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
 9.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

제5조(센터의 조직) 센터의 조직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시

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.

제6조(직원임용)

- ① 센터장은 법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보고 후 회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.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수탁기간에 따르며, 법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3년으로 한다.
- ③ 전항외 직원은 센터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면하고 시장 및 법인에게 보고한다.
- ④ 직원의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센터에 대한 지원)

- ①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는 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보고 및 감사) 수탁기관의 장은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, 연2회 법인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
제9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정에 의거하며, 해당 조항이 없을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.
-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.
- ④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해 연1회 법인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 (결재권한) 지원센터는 법인의 인감사용, 사업계획의 승인, 사업진행상 중대한 변경 및 신규 사업 승인은 법인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비밀유지의 의무)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계속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